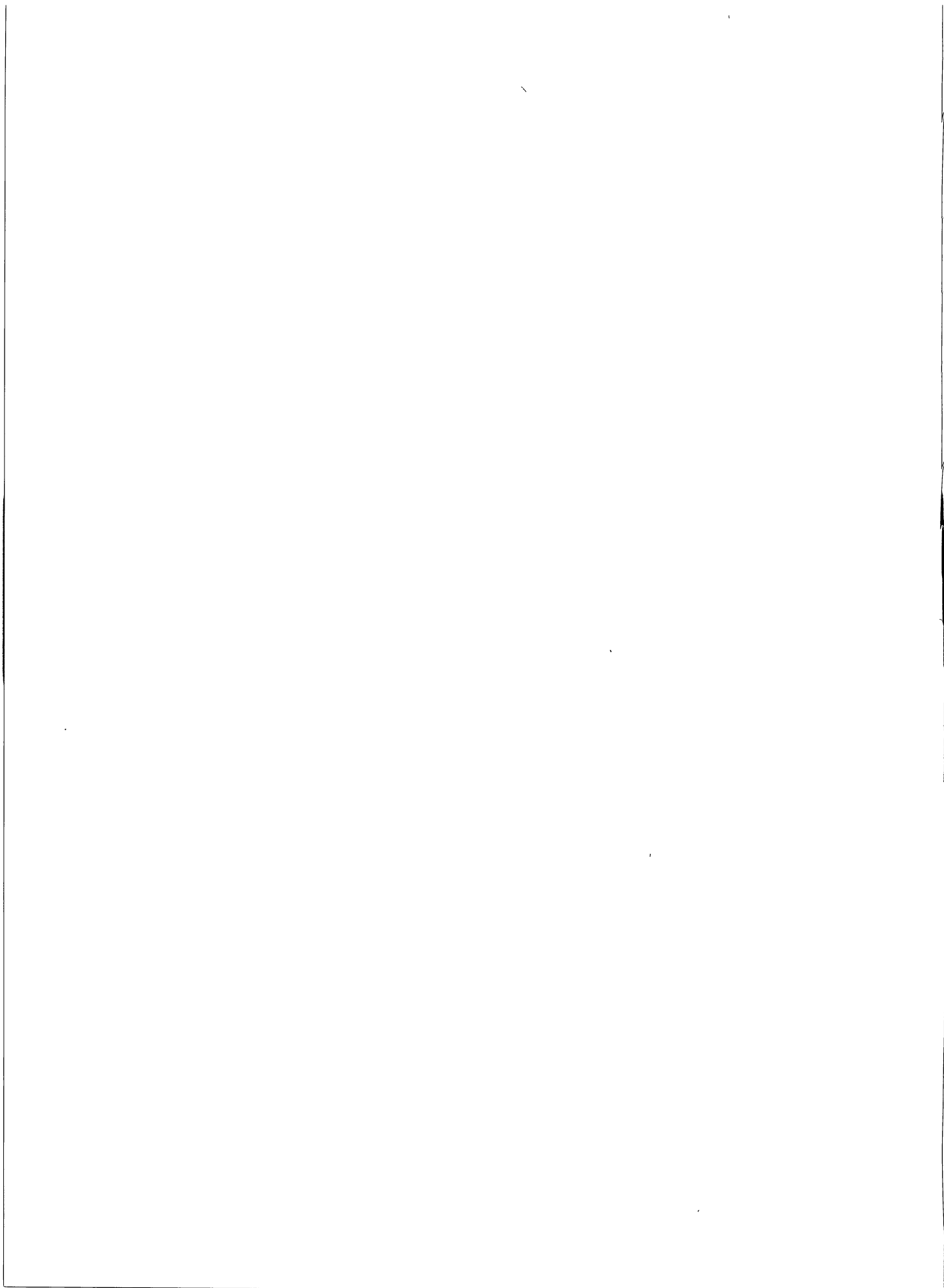


2024년 6월 제1차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논술형(기록형)

시험과목

민사법(기록형)

응시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자 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의 답안지(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제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는 답안지에 한해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번호를 정정해 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4.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IBT 방식】

1.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시작, 종료되며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수기 방식】

1.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5. 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6.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문 제】

귀하는 변호사 김명석으로서, 의뢰인 이중권과의 상담을 통해 아래 【상담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의뢰인 희망사항】 기재사항에 관한 본안소송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다.

의뢰인을 위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작성요령】

1. 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24. 6. 27.로 하시오.
2.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으로 특정하시오(예, ‘피고 홍길동’).
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가급적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시오.

【이하의 작성요령은 실무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4. 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전속관할이 있는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는 하지 마시오.
5. 【의뢰인 희망사항】란에 기재된 희망사항에 부합하되, 현행법과 그 해석상 승소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청구하고, 소 각하나 청구기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오.
6.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상대방에게 항변사유가 있고 그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청구범위에 반영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으로 정리된 사항 중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해당 법리에 대한 판단을 거쳐서 청구를 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범위에 반영하되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구원인 부분에 배척의 이유를 기재하시오.
7. 【의뢰인 상담일지】와 첨부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작성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첨부된 서류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시오. 기록에 (인)으로 표시된 부분은 적법하게 날인된 것으로 간주하시오.
8. <증명방법>과 <첨부서류>란 기재는 생략하고, 부동산의 표시는 아래 [별지 목록]을 소장 말미에 첨부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므로 소장 말미에 [별지 목록]을 기재 내지 작성하지 마시오.
9.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다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마시오.
10.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기록상의 날짜가 공휴일인지 여부, 문서의 서식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마시오.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0 대 320㎡
2.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447 대 421㎡
3. 서울 강서구 등촌동 14-35
 [도로명주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424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50㎡
 2층 150㎡. 끝.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이하 제2호 내지 제8호는 생략)

[별표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일부)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의뢰인 상담일지

변호사 김 명 석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 605호(서초동, 서초빌딩)

☎ : 02-530-2356, 팩스 : 02-530-2378, e-mail : msk@kmail.com

접수번호	2024-097	상담일시	2024. 6. 3.
상담인	이중권(010-7641-9934)	내방경위	지인 소개

【상 담 내 용】

1. 흑석동 토지 관련

- 가. 의뢰인은 2023. 11. 30. 흑석동 소재 토지를 박소유로부터 매수하였다. 박소유는 의뢰인에게 잔금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 나. 그러나 박소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후 사망하였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박장인, 박호균이 있다.
- 다. 의뢰인의 채권자인 최진수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2. 일원본동 토지 관련

- 가. 의뢰인은 일원본동 소재 토지를 김효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 당시 김효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김성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지만, 아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 나. 김효원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등촌동 상가 관련

- 가. 김주성은 2019. 5. 1. 마재상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중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9. 5. 1.부터 2024. 4.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